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의안번호 : 제1691호

다. 제출일자 : 2020. 7. 13.

라. 회부일자 : 2020. 7. 14.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17. ~ 2020. 7. 24.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중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구제권이 제약된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하고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¹⁾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의 구제권 등과 관련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등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
-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였고,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²⁾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³⁾ 하였음

■ 과태료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

- 현행 조례는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⁴⁾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_ 인권담당관(2020. 4. 6.)

4)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제11조제2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구제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이의신청’은 근거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이의제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용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후 수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